

제 129 호
1982. 9. 11

발행인 : 서울특별시 강성배
 편집 : 공보관 전영호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통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보

차례

○ 조 례

제 1671 호 : 병원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3

제 1672 호 :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 4

○ 고 시

제 37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8

제 375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교육및연구지구) 실효및 결정
 고시 9

제 376 호 : 공원조성계획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 9

<이면계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77 호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 허가 변경	10
제 378 호 :	도시계획용도 (상업) 지역변경 지적고시	11
제 379 호 :	육류변동 가격고시	11
제 38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가 변경	12
제 381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실효 및 결정	12

◎ 공 고

제 401 호 :	서울특별시분임징수관 (과징금) 공인신조등록공고	14
-----------	-----------------------------	----

◎ 예 규

제 429 호 :	서울특별시공무원증발급규정중 개정규정	14
-----------	---------------------	----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병원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671 호

병원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등에 대한 임상연구 및 의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와 주민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①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 및 의료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공사에 대하여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주민세를 면제한다.

② 병원공사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 년이내에 정

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소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병원공사에 대하여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지방공사
강남병원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672 호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 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사 강남병원 (이하 " 병원 " 이라 한다) 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법인격) 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 3 조 (공사설립) ① 병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설립한다.

② 병원은 서울특별시장 (이하 " 시장 " 이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원을 설치할수 있다.

제 4 조 (자본금) ① 병원의 자본금은 150 억원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자본금은 서울특별시가 전액을 출자하며 이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 5 조 (정관) ① 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의학연구포함)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이사회) ① 병원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병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2 장 임원과직원

제 7 조 (임원) ① 병원에 이사 (병원장 포함) 및 감사를 두되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중 1 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이 된다.

제 8 조 (병원장) ① 병원장은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병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이사) ①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② 이사는 병원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 10 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 11 조 (직원) ① 직원은 정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사, 기능직 및 고용직의 채용에 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제 13 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타 의료기관의 직원을 병원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 12 조 (겸직제한) 병원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병원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3 장 사 업

제 13 조 (사업) 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진료사업
- 2. 의료요원의 훈련
- 3. 의학의 연구
-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 14 조 (대행사업) ① 병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 대행시 필요한 비용은 해당사무의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4 장 제 무 회 계

제 15 조 (사업년도) 병원의 사업년도는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년도에 의한다.

제 16 조 (예산) 병원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2개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7 조 (결산) 병원장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6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8 조 (계리의 원칙) 병원의 계리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계리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 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손익금처리) ①병원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2. 사업준비금의 적립
- 3. 차기이월

②병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이

로도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 20 조 (사채발행 및 외국차관등)

①병원장은 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병원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상환을 보증할수 있다.

제 21 조 (기금 및 보조금등) ①병원은 정관이 정하는 특수연구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병원의 기본시설 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수 있다.

③시장은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로 병원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때와 병원 경상수입으로 병원의 시설비 또는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 5 장 감 독

제 22 조 (감독) ①시장은 병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병원장은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2. 임원과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의로수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3 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병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24 조 (재산의 무상사용)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 13 조의 고유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진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직원임용의 특례) 병원장은 제

1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원의 최초업무개시 당시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우선하여 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3.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병원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 1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원의 설립일로 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권리의무의 승계) 병원은 설립당시의 서울특별시를 병원사업유일회계에 속하는 서울특별시립 강남병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병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5.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1. 1982년도 병원사업 특별회계중 서울특별시립 강남병원의 고부될 일반회계로 부서의 전입금 재산중 병원설립 당시 고부되지 아니한 것은 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고부한다.

② 병원장은 이 조에 의하여 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82년도 서울특별시립 병원사업유일회계(강남병원)을 종전의 회계과라 지출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설립되면 그 설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7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3 호 (76. 12.20)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1. 12.31) 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11.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시흥동 산 100-4 번지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 동일여자중고등학교) 부지조성 공사
- 다. 사업면적 : 39,779㎡ (12,033명)
- 라. 세부시설 계획
 - ㄱ) 건축면적 : 2,115
 - ㄴ) 연면적 : 6,949
-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산 100-4 학교법인 동일학원 이사장 최 용찬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ㄱ) 착수예정일 : 1982. 9. 20.
 - ㄴ) 준공예정일 : 1982. 12. 30.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동일여자중고등학교	구로구시흥동	산 100-4	임야	38,268	없음
	"	산 100-10	"	188	"
	"	237-16	대지	1,322.3	"
계				39,779㎡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산 100-4, 237-16 학교 법인 동일학원이사장 최 용찬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산 100-10 동일학교 학교장 김 동철

<p>◎ 서울특별시고시제 375 호</p> <p>도시계획용도지구(교육및연구지구) 실효및결정고시</p> <p>1. 서울특별시 용도지구중 건설부 고시 제 108 호(75. 6. 23) 로 결정된 교육 및 연구지구가 지적승인 기간 도과로 인하여 익 결정후 2 년이 되는 다음날로 실효되것기 도시계획</p> <p>○ 도시계획 용도지구 실효조서</p>	<p>법 제 1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9 조 의 규정에 의거 실효 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521 호(81. 12. 31) 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낸다.</p> <p>1982. 9. 13.</p> <p>서울특별시장</p>		
<p>지 구 명</p> <p>교육 및 연구지구</p>	<p>위 치</p> <p>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일대</p>	<p>면 적</p> <p>4,317,500㎡</p>	<p>비 고</p> <p>서울대학교 주변</p>
<p>○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조서</p>			
<p>지 구 명</p> <p>교육 및 연구지구</p>	<p>위 치</p> <p>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일대</p>	<p>면 적</p> <p>4,191,000㎡</p>	<p>비 고</p> <p>서울대학교 주변</p>
<p>* 별첨 도면표시라 갈음(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376 호</p> <p>공원조성계획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p> <p>1. 건설부 고시제 145 호(81. 4. 29) 로 결정된 당시 관내 반포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일부를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공원법 제 4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와 동법 시행령 제</p>	<p>7 조의 2, 건설부 고시 제 521 호(81. 12. 31)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국지과와 강남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낸다.</p> <p>1982. 9. 14.</p> <p>서울특별시장</p>		

가.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도로 B=8 L=480	반포동 299-1 반포근린 공원내	3,840 ㎡	
변 경	도로 B=8 L=480	"	3,840 ㎡	기존시설
	정구장 (6면)	"	4,002 ㎡	추 가
	관리 시설	"	81 ㎡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77 호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32 호(76.6.17) 및 동고시제 341 호(76.12.16) 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521 호 (81.12.31) 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변경하였 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1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종로구 구기동 151 번지외 3 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운동장) 시행
(주) 미도파 체육관 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 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123 번지 (주) 미도파백화점 대표 유 명집

라. 면적 및 규모 : 대지 7,359 ㎡
건축 350.54 ㎡

마.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일 :
착수일 : 허가일로부터 15 일내
준공일 : 착수일로부터 5 개월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주소, 성명 : 별첨

아. 공사설계 도서 : 별첨

◎서울특별시고시제 378 호

도시계획용도(상업)
지역변경지적고시

1. 건설부고시 제 270호(82.7.21)로 도시계획용도(상업)지역 변경 결정된 봉천동 856번지(봉천4거리 일대) 및 신림동 1640번지(신림4거리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호(81.12.31)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련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 다.

1982.9.14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용도(상업)지역변경지적조서

구 분	변 경 면 적		고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상업 지역 - 주거 지역	
봉 천 동 856 일 대	101,700 평	179,200 평	봉천 4거리 주 변
신 립 동 1640 일 대	39,600 평	137,800 평	신림 4거리 주 변

◎서울특별시고시제 379 호

육류연동가격고시

육류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 제 49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9.15
서울특별시장 김성민

1. 육류 연동가격
돼지고기(정육 600그램당) 2,050원

2. 시행일: 1982.9.16. 부터

◎서울특별시고시제 380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변경허가(2차)

서울특별시고시 제 101 호(77.4.11)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378 호(77.10.27)로 도시계획(학교)시행허가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269 호(82.7.16)로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 허가된 성북구 돈암동 173-1의 23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463 호(79.12.10)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 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2.9.15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성북구돈암동 173-1의 23 필지
-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2차)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당초면적 및 규모
 - 국민학교 : 지하 1 층, 지상 2 층 (연면적 2,617㎡)
 - 나. 중학교 : 지하 1 층, 지상 5 층, 옥탑 (연면적 6,558.50㎡)

특별교실 :

- 나. 변경면적 및 규모
 - 국민학교 : 지하 1 층, 지상 2 층 (연면적 2,617㎡)
 - 중학교 : 지하 1 층, 지상 5 층, 옥탑 (연면적 6,558.50㎡)
 - 특별교실 : 지하 1 층, 지상 6 층, 옥탑 (연면적 5,679㎡)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 173-1 학교법인 성신학원이사장 리숙중
-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 가. 착공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나. 준공 : 1983.12.31
- 6. 사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도시정비과에 보 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381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및 결정

- 1. 서울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인 안산공원등 9개소 공원계획은 건설부고시 제 138 호(77.7.9) 및 동고시 제 418 호(78.12.26), 제 390 호(79.10.31)로 재 정비 결정 및 변경 결정된후 법상 지적승인 시효기간내 지적승인 고시 미이행으로 실 효되었기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521호(81.12.31)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및 재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지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2.9.1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1) 시설(공원) 실효조서: 방향의 결정조서 내용과 같으므로 이와 가름함.
 2) 실효사유: 도시계획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3) 실효일자: 위의 결정고시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79.7.9 80.12.16 81.10.31)
 4) 실효도면: 결정도면과 같으므로 이와 가름함.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1) 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공원번호	공원종류	공원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결정	2	자연공원	안산공원	서대문구, 영천, 풍곡, 북아현, 연희동	2,014,287	·
·	근 04-02	근린공원	응봉제2공원	중구신당동, 상동구행당, 금호, 응봉동	788,900	·
·	근 03-05	·	전농제2	동대문구전농, 당삼리	165,200	·
·	근 05-02	·	개운공원	성북구 종암, 돈암, 안암동	501,225	·
·	근 06-04	근린공원	월곡제1공원	도봉구미아, 번동, 성북구 월곡, 상원동, 장미	1,401,352	·
·	근 07-10	·	궁동공원	서대문구 연희동	135,000	·
·	근 11-04	·	상도공원	동작구 상도동 관악구 봉천동	641,000	·
·	근 11-05	·	삼일공원	동작구 사당동	141,500	·
·	묘 11-01	묘지공원	현충공원	동작구사당, 동작 북성, 상도동	2,183,903	·

2) 결정도면: 별첨(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01호

서울특별시분임징수관(과징금
금)공인신조등록공고

서울특별시 분임징수관(과징금 수
납판계용)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
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
인규칙 제 7조에 의거, 등록하고 관
인규정 제 9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 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2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 가. 서울특별시 분임징수관인(과징금)
- 나. 서울특별시 분임수입금출납원인(과징금)

2. 사용개시일 : 82.9.17.

3. 공인의 인영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분임징수관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분임수입금출납원인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429호

서울특별시공무원증발급
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2.9.20

서울특별시장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한 모든 시산하기관에 근
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발급권
을 내부 위임한다.

② 제 1항의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은 시장이 발급한다.

제 5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9조를 제 9조제 1항으로 하고,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수한 공무원증은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소
각한다.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 조 (공무원증 분실자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증의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1 회분실 - 경고 (훈계)
- 2 회이상분실 - 징계 요구

② 공무원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 7 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공무원증번호부여표

1. 본	청 : 행정직, 별정직	1 - 00001
	기술직, 기능직, 전문직	2 - 00001
	고용직	3 - 00001
2. 구	청	5 - 00001
3. 사	업 소	6 - 00001
4. 소	방 본 부	7 - 00001
5. 경	찰 국	8 - 00001

(별지 제 6호 서식)

공무원 증회 수 및 소각대 장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공무원증 번호	회수일자	회수사유	소각일자

130mm × 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 7호 서식)

공무원 증분 실신고 대 장

연번	접수일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공무원증 번호	분실사유	비 고 (조치)

130mm × 268mm

(신문용지 54g/㎡)

공무원증발급규정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u>시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잡급직원, 전문직원 및 시한부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u></p>	<p>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u>시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u></p>
<p>제 3조 (발급권의 위임) <u>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각급 기관 장에게 내부 위임된 공무원증 발급대상 직원은 다음과 같다.</u></p> <p>1. <u>구청장 및 2급사업소장 :</u> <u>3급을류이하 공무원</u></p> <p>2. <u>3급사업소장 :</u> <u>4급이하 공무원</u></p> <p>3. <u>4급잡사업소장 :</u> <u>고용원 기타</u></p>	<p>제 3조 (발급권의 위임) <u>1)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과 소방본부장 및 경찰국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발급권을 내부 위임한다.</u> <u>2) 제 1항의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은 시장이 발급한다</u></p>
<p>제 5조 (공무원증 번호 부여) 공무원증 번호는 <u>별표와 같이 부여한다.</u></p>	<p>제 5조 (공무원증 번호 부여) 공무원증 번호는 <u>"별표"와 같이 부여한다.</u></p>

현행	개정
<p>(별표)</p> <p>= 공무원증번호부여표 =</p> <p>1. 본청 : 행정직·별정직·<u>전문직</u></p> <p style="padding-left: 150px;">1-00001</p> <p style="padding-left: 50px;">기술직·기능직 2-00001</p> <p style="padding-left: 50px;">고용직 <u>기타</u> 3-00001</p> <p>2. 구청 5-00001</p> <p>3. 사업소 6-00001</p>	<p>(별표)</p> <p>= 공무원증번호부여표 =</p> <p>1. 본 청 : 행정직·별정직 1-00001</p> <p style="padding-left: 100px;">기술직·기능직·<u>전문직</u> 2-00001</p> <p style="padding-left: 100px;">고용직 3-00001</p> <p>2. 구 청 5-00001</p> <p>3. 사 업 소 6-00001</p> <p>4. 소방본부 7-00001</p> <p>5. 경 찰 국 8-00001</p>
<p>제 9 조 (공무원증의 회수) 발급권자는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하여 분실확인서를 받는다.</p>	<p>제 9 조 (공무원증의 회수) ① 발급권자는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받는다.</p> <p>② 회수한 공무원증은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소각한다.</p>
<p>(신 설)</p>	<p>제 10 조 (공무원증 분실자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증의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회분실 - 경고 (훈계) • 2 회이상 분실 - 징계 요구 <p>② 공무원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 7 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p>

사 령

◎ 1982년 9월 15일자

령제 48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상희	건축지도과	문화과	지방건축기사
김용백	성동구	수원기초과	"
한수창	도봉구	설동구	"
서장원	성동구	성북구	"
윤혁경	강동구	서대문구	"
오제룡	서대문구	강동구	"
박심근	강동구	시립운동장	"
정해룡	강남구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사보
이철우	구로구	성북구	"
김경부	영등포구	구로구	"
김정훈	동작구	"	"
조민주	구로구	영등포구	"
이강욱	강동구	영등작구	"
이승택	성북구	강남구	"
김진홍	시립운동장	강남동구	"
이현기	문화과	"	"
윤종인	상하수국수원기전과	종관합의동업장소	"
이길동	강남구	종관합의동업장소	지방건축기원
김주영	시립대학	구로구	"
이길수	동작구	"	"
서봉석	공무원교육원	"	"
배동석	구로구	동작구	"
조방섭	성동구	"	"
이병서	강남구	시립대학	"
임남순	강동구	종로구	지방건축기원보
김육성	강동구	"	"

성명	발행사항	현부서	직급
이기영	강남구	중구	지방건축기원보
박인섭	강동구	"	"
방민수	강남구	"	"
이동호	강서구	"	"
김종년	강동구	"	"
노도현	강남구	용산구	"
임정렬	강동구	"	"
정동욱	강동구	성동구	"
박배춘	강동구	"	"
최재홍	"	"	"
김종관	동대문구	"	"
김정광	동성북구	"	"
김종학	중성구	"	"
안재준	중성동구	동대문구	"
정만수	"	"	"
변종일	강동구	성북구	"
이상규	강동구	성북구	"
김용태	성북구	"	"
김달호	성북구	"	"
허효욱	"	"	"
지홍선	강서구	은평구	"
황보창	강서대문구	"	"
박강철	강남구	서대문구	"
김수권	강서구	"	"
김경호	강서대문구	마포구	"
최인산	강남구	마포구	"
류옥형	강동구	영등포구	"
한동현	"	"	"
이동제	구로구	동작구	"
김승봉	구영동구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현구	영등포구	동작구	지방건축기원보
여운호	강남구	"	"
박통근	관악구	"	"
유경순	동대문구	"	"
조기술	중영등포구	관악구	"
박순복	성북구	관악구	"
이병록	강서구	마포구	"
박하규	서대문구	마포구	"
나정표	마포구	"	"
이희우	마포구	구로구	"
이희순	동시립운동장	구로구	"
이희우	중	강동구	"
이종백	"	"	"
김홍근	강동구	공무원교육원	"
김관식	"	시립운동장	"
김시학	"	세종문화회관	"
박청일	영등포구	성동구	지방건축기사
이일섭	강남구	건축지도과	"
김원환	강연료과	산업경제국	지방전기기사
김종완	강연료과	"	"
황병하	강연료과	"	지방전기기사보
양사선	강연료과	"	"
김희완	"	"	지방기계기사보
남상갑	연료과 (기지기사보)	"	"
김점개	"	"	"
최정섭	청소과 (기계기사)	환경녹지국	지방기계기사
곽영시	"	"	지방기계기사보
정수철	공원녹지과	"	지방전기기원
김기호	공원녹지과	상하수국	지방전기기사보
한희호	수원기전과	"	"
안정준	수원기전과	"	지방기계기사보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강명원	수원기전과	상하수국	지방기계기사
이익로	"	"	지방기계기사보
이경순	운수 2과	교통국	지방기계기사
홍순학	교통기획과 (기계기사보)	"	지방기계기사보
민수식	도로과	건설관리국	지방기계기사
김재웅	건설행정과	"	지방기계기원
임영룡	도로과	"	지방전기기사
유충근	건축지도과	"	지방전기기사보
김태위	도로과	"	"

령제 482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정보희	복부위생처리장장	상공과	지방기계기사
한상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연료과	"
박주남	세종문화회관	건설행정과	"
이경순	교통국	청소과	"
홍만기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수원기전과	"
김룡기	종합건설본부	치수과	"
강용규	자동차관리사업소	운수 2과	"
민수식	건설관리국	건설자재사업소	"
강명원	상하수국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이춘성	종합건설본부	복부위생처리장장	"
최정섭	환경녹지국	자동차관리사업소	"
공종철	복부위생처리장	총무과	지방기계기사보
이상만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시민과	"
이재호	종합건설본부	연료과	"
양동구	서부위생처리장	청소과	"
조경례	종합종말처리사업소	교통기획과	"
신경호	관악구	운수 2과	"
김세열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종로구	"
김희완	산업경제국	건설자재사업소	"
남삼갑	"	중기관리사업소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인도	종합건설본부	공무원교과원	지방기체기사보
홍성철	도봉구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곽영시	환경녹지국	"	"
탁영동	동대문구	"	"
권용환	김포수원지사무소	"	"
권병효	자동차관리사업소	농촌지도소	"
김점배	산업경제국	서부위생처리장	"
임승식	총무과	북부위생처리장	"
하영준	농촌지도소	자동차관리사업소	"
홍순학	교통국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소병화	구의수원지사무소	"	"
현상근	선유수원지사무소	"	"
김당수	강동구	북부수도관리사업소	"
김인식	상하수국	선유수원지사무소	"
안정준	"	김포수원지사무소	"
이익노	"	"	"
박김용	자동차관리사업소	중구	지방기체기원
홍성철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성동구	"
오종천	"	동대문구	"
김종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도봉구	"
김금철	서부위생처리장	은평구	"
김용구	시립운동장	영등포구	"
김태용	종합건설본부	관악구	"
신태식	자동차관리사업소	강남구	"
김근환	성동구	건설자재사업소	"
김원찬	만리동배수지	동부건설사업소	"
연일홍	은평구	서부건설사업소	"
송종희	노량진수원지사무소	남부건설사업소	"
이정구	북부수도관리사업소	북부건설사업소	"
김유찬	동대문구	중기관리사업소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삼경	강동구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지방기계기원
박상완	영등포수원지사무소	시립운동장	"
박종화	영등포구	서부위생처리장	"
김재웅	건설관리국	자동차관리사업소	"
전혁기	공무원교육원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문호준	성북구	"	"
유승춘	시민과	"	"
최수완	강서구	팔당수원지사무소	"
김영진	용산구	김포수원지사무소	"
양승학	중구	만리동배수지사무소	"
박봉식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용산구	지방기계기원보
한원희	북부수도관리사업소	도봉구	"
서정작	종합종말처리사업소	동대문구	"
강성기	도봉구	북부건설사업소	"
박광희	김포수원지사무소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한천구	성동구	"	"
유재포	선유수원지사무소	서부위생처리장	"
박극현	북부위생처리장	자동차관리사업소	"
최만선	종합종말처리사업소	북부수도관리사업소	"
조동환	종합건설본부	"	"
이성배	영등포구	노량진수원지사무소	"
조남갑	북부수도관리사업소	영등포수원지사무소	"
정연학	서부위생처리장	선유수원지사무소	"
명제 483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배종원	만리동배수지사무소장	총무과	지방전기기사
윤은구	선유수원지사무소	상공과	"
박길부	종합건설본부	연료과	"
김기송	"	도로과	"
김원	산업경제국	중로구	"
우재광	관악구	성북구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종완	산업경제국	서대문구	지방전기기사
안익환	구의수원지사무소	관악구	"
이종훈	성북구	서부건설사업소	"
신기재	죽도수원지사무소	북부건설사업소	"
김희태	종로구	구의수원지사무소	"
전병욱	영등포수원지사무소	죽도수원지사무소	"
임영룡	건설관리국	영등포수원지사무소	"
이원노	동작구	선유수원지사무소	"
이송만	서대문구	만리동배수지사무소장	"
김용구	새종문화회관	시민과	지방전기기사보
강도석	영등포구	"	"
정현종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삼공과	"
강성구	관악구	연료과	"
허건욱	종합종말처리사업소	도로과	"
오국록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건축지도과	"
배현주	서대문구	종로구	"
황병하	산업경제국	중구	"
양사선	"	용산구	"
이동욱	용산구	동대문구	"
안순환	강동구	성북구	"
유충근	건설관리국	"	"
김기호	상하수국	서대문구	"
한희호	"	"	"
김태위	건설관리국	강서구	"
금봉순	시민과	관악구	"
기복도	"	강남구	"
박정식	은평구	강동구	"
박승호	성북구	공무원교육원	"
정영철	강서구	새종문화회관	"
이준규	종합건설본부	종합운동장건설본부	"
위창양	중구	서부위생처리장	"
배민호	종무과	어린이대공원	"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이경열	강남구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지방전기기사보
김태기	영등포구	종로구	지방전기지원
김광익	영등포수원지	용산구	"
강행원	종합건설본부	성동구	"
김성식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
이영목	종로구	은평구	"
김서현	북부위생처리장	강서구	"
박시철	종합건설본부	영등포구	"
장진영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
유영운	서부위생처리장	"	"
차제창	용산구	성부건설사업소	"
김점식	도봉구	"	"
안천현	관악구	북부건설사업소	"
김종호	종로구	"	"
정수철	환경녹지국	서부위생처리장	"
나용재	성동구	북부위생처리장	"
이준영	중구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조상훈	보광동수원지사무소	"	"
정영기	시립대학	"	"
박용철	시민과	"	"
박정하	서대문구	보광동수원지사무소	"
이병복	동대문구	영등포수원지사무소	"
임선목	강서구	선유수원지사무소	"
전만진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종로구	지방전기지원보
차영희	성북구	"	"
박선규	종합건설본부	"	"
서형철	영등포구	중구	"
김종태	종합건설본부	동대문구	"
박성우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
김명	"	성북구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강 범	종합종말처리사업소	도 봉 구	지방전기지원보
노 원 식	종합건설본부	서대문구	"
최 재 곤	선유수원지사무소	영등포구	"
지 영 현	종합건설본부	관악구	"
황 동 준	서부위생처리장	"	"
정 정 환	동대문구	시립대학	"
이 명 기	도 봉 구	동부건설사업소	"
최 영 진	종 로 구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권 일 혁	성 동 구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

1982년 9월 14일자

명제 484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허 정 현	종합건설본부과전근무(82.9.14 = 82.12.31) (한강종합개발추진요원)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
유 설 진	"	지하철도과	"
황 의 태	"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보
장 석 대	"	강 동 구	"
한 형 록	"	용 산 구	지방토목지원
이 해 완	"	강 서 구	"
서 정 수	"	구 로 구	지방행정주사
이 후 경	"	강 동 구	지방행정주사보

명제 485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윤 식	지방공무원법제 69조 제 1항 1, 2호의 규정에 의거 전 책에 처함.	중 구 수도공사과장	지방토목기사
변 영 균	"	도 봉 구	지방토목기사
송 세 철	성북구근무를 명함.	"	"
정 상 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제 1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	북부수도관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p>◎ 1982년 9월 15일자 명제 486 호</p> <p>비상계획과 윤석봉 지방행정주사보</p> <p>환경녹지구 공원녹지구 근무를 명함.</p> <p>종합기술시험연구소 이정희 지방행정서기</p> <p>보건사회국 부녀청소선과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사회복지과 임주영 행정주사보</p> <p>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p> <p>구로구독산동 박순식 지방행정서기</p> <p>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p> <p style="text-align: right;">명제 487 호</p> <p>아동병원 문정주 지방기계원 (기능직 8 등급)</p> <p>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p> <p>종합종말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p> <p style="text-align: right;">명제 488 호</p> <p>경찰국면허과 이광봉 지방기계수 (10 등급)</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중구이채근 지방토목기과</p> <p>도로과도로시설계장</p> <p>◎ 1982년 9월 16일자 명제 490 호</p> <p>영등포구 홍순구 지방건축기사</p> <p>성복구 근무를 명함.</p> <p>◎ 1982년 9월 17일자 명제 491 호</p> <p>공원녹지구 이창규 지방전기기사</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 1982년 9월 18일자 명제 492 호</p> <p>관악구산업과 신동진 행정주사보</p> <p>원호처 전출을 명함.</p> <p>◎ 1982년 9월 20일 명제 493 호</p> <p>신규정연경</p> <p>지방보건연구사시보에 임함.</p> <p>종합기술시험연구소 근무를 명함.</p>
<p>◎ 1982년 9월 17일자 명제 489 호</p> <p>도로과도로시설계장 박인규 지방토목기과</p> <p>은명구</p>	